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안 번호	6233
----------	------

제안연월일 : 2020. 1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187호)	장제원	2020.6.30.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0.9.15.)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1501호)	박대수	2020.7.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102160호)	정부	2020.7.17.	

###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관리할 책무가 있으나,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음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도지사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소음·진동관리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안 제7조)

시·도와 대도시는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강화된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음.

#### 나. 신고제도 합리화(안 제8조 및 제22조)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고,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함.

다. 결격사유 정비(안 제42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1항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제3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1호 단서 중 “개임(改任)하면”을 “교체 임명하면”으로 한다.

제50조 본문 중 “속행”을 “계속 진행”으로 한다.

제60조제3항제1호 중 “제8조2항에”를 “제8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제2호의4 중 “제22조제3항제1호”를 “제22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제22조제3항제2호”를 “제22조제5항제2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제42조제3호, 제43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보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③ (생략)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2. (생략)

3. 제43조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제5항제2호-----  
-----  
-----  
-----.

제42조(결격 사유) -----  
-----  
-----  
-----.

1. 2. (현행과 같음)

3. -----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

4. 5. (생략)

제43조(등록취소 등)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  
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4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2조제5호에 해당  
하는 자가 있으나 6개월 이  
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  
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8. (생략)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  
10조(제3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  
의 승계가 있으면 종전의 사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이  
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

4. 5. (현행과 같음)

제43조(등록취소 등) -----  
-----  
-----  
-----  
-----  
-----  
-----  
-----  
-----  
-----

1. -----  
-----  
-----  
-----  
-----  
-----교체 임명  
하면-----.

2. ~ 8. (현행과 같음)

제50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  
-----  
-----  
-----  
-----  
-----  
-----  
-----  
-----  
-----

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업자(상속에 의한 승계는 제외한다)가 그 사업을 승계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 2의3. (생략)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4. ~ 10. (생략)

④ (생략)

---계속 진행-----.

제6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제8조제2항에-----

2. ~ 2의3. (현행과 같음)

2의4. 제22조제5항제1호-----

3. 제22조제5항제2호-----

4. ~ 10.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